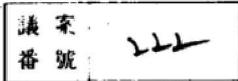


大田教員研修院設置 및 運營條例案



提出年月日：1993. 1. .

提出者：大田直轄市教育監

1. 提案理由

大田直轄市教育·學藝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職員의 資質涵養과 創意的인 職務能力을 培養하여 教育發展에 기여하고자 大田教員研修院(이하 “研修院”이라 한다)을 設置하고 이에 따른 諸般事項을 定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設置目的을 定함(案 제1조)

나. 位置를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61-2번지로 定함(案 제2조)

다. 研修院의 業務에 관한 사항을 定함(案 제3조)

- (1) 教育·學藝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職員의 研修
- (2) 기타 教育監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研修

라. 組織 및 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사항(案 제4조 내지 案 제6조)

- (1) 研修院에 院長을 두되 獎學官으로 포함
- (2) 院長 밑에 3部를 둠
- (3) 研修院의 事務分業과 定員에 관한 사항은 教育規則으로 定하도록 함

마. 研修院의 施設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案 제8조)

바. 研修院에 圖書室등 부속시설을 設置·運營할 수 있도록 함(案 제9조)

사. 條例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教育規則으로 定하도록 함(案 제10조)

3. 參考事項

가. 關聯法令：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 제41조

나. 大田教員研修院設立計劃 同議案 議決 結果通報 공문사본：별첨

다. 教育機關 設置 承認 公文寫本：별첨

대전교원연수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대전직할시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교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위치) 연수원은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61-2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수
2. 기타 대전직할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4조(원장)①연수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①원장의 통할하에 총무부·연수부 및 운영부를 둔다.

②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수부장·운영부장·총무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연수원의 사무분장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의 정원)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연수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및 연수생 위탁기관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비용징수)①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비·숙박비·간식비·교재비등의 연수경비를 실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경비의 징수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9조(부속시설)연수원에는 도서실 등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교원연수원연수경비징수한도액

(금액단위 : 원)

구 분	연 수 경 비	단 위	비 고
식 비	1,500원	1인 1식	
숙 박 비	400원	1인 1일	
간 식 비	500원	1인 1일	
교 재 비	1,000원		

參考法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

-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大田教員研修院設置 및 運營條例案

議案
番號

提出年月日：1993. 1. .

提 出 者：大田直轄市教育監

1. 提案理由

大田直轄市教育·學藝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職員의 資質涵養과 創意的인 職務能力을 培養하여 教育發展에 기여하고자 大田教員研修院(이하 “研修院”이라 한다)을 設置하고 이에 따른 諸般事項을 定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設置目的을 定함(案 제1조)

나. 位置를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61-2번지로 定함(案 제2조)

다. 研修院의 業務에 관한 사항을 定함(案 제3조)

(1) 教育·學藝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職員의 研修

(2) 기타 教育監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研修

라. 組織 및 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사항(案 제4조 내지 案 제6조)

(1) 研修院에 院長을 두되 獎學官으로 보함

(2) 院長 밑에 3部를 둠

(3) 研修院의 事務分業과 定員에 관한 사항은 教育規則으로 定하도록 함

마. 研修院의 施設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案 제8조)

바. 研修院에 圖書室등 부속시설을 設置·運營할 수 있도록 함(案 제9조)

사. 條例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教育規則으로 定하도록 함(案 제10조)

3. 參考事項

가. 關聯法令：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 제41조

나. 大田教員研修院設立計劃 同議案 議決 結果通報 공문사본：별첨

다. 教育機關 設置 承認 公文寫本：별첨

대전교원연수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대전직할시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교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위치) 연수원은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61-2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수
2. 기타 대전직할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4조(원장)①연수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①원장의 통할하에 총무부·연수부 및 운영부를 둔다.

- ②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수부장·운영부장·총무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연수원의 사무분장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의 정원)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연수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및 연수생 위탁기관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비용징수)①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비·숙박비·간식비·교재비등의 연수경비를 실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경비의 징수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9조(부속시설)연수원에는 도서실 등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교원연수원연수경비징수한도액

(금액단위 : 원)

구 분	연 수 경 비	단 위	비 고
식 비	1,500원	1인 1식	
숙 박 비	400원	1인 1일	
간 식 비	500원	1인 1일	
교 재 비	1,000원		

參考法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

-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전직할시

우 302-162 대전직할시 서구 도마2동 172-16 전화 522 4157 전송 522 4156

문서번호 형관 01601 310

시행일자 1992. 4. 3. ()

수신 수신처 참조

선결	초등교직과장	AA	회
접	일자	1992. 4. 3	시
	시간	:	결
수	번호	315	재
처리과	초등교직과		공
담당자			람

제목 :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통보

-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 01604 - 86(92. 4. 1)와 관련입니다.
- 제11회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의안이 이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가. 대전직할시교원연수원설립계획동의안 : 원안의결
 - 나. 대전학생교육설립계획동의안 : 원안의결. 끝.

행정관리담당 

수신처 본(6,7)

교 육 부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교육부 전화(729-3316) 전송(736-3402)

문서번호 교행 01210 561

시행일자 1992. 6. 29(년)

(경유)

수신 대전직할시교육감

선결	교육감	지시	
접	일자 시간 1992. 7. 9	결	부교육감
수	번호 66>	재	부교육감
처리과	보통교과과	공	초등교과과장
담당자		람	인사과담당자

제목 : 교육기관 설치 승인

1. 초교 251300-338('92. 6. 8)호로 제출한 대전교원연수원 설치 승인 신청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승인하며
2. 하부조직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치조례안 작성시 우리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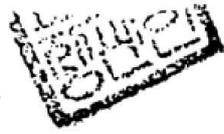
첨부 : 대전교원연수원 설치 승인서 1부. "끝"

교 육 부 장

보통교육국장 전결



대전교원연수원설치승인서

구 분	승 인 내 용
○ 목 적	교육 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명 칭	대전교원연수원 
○ 위 치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 61-2
○ 시설규모	부지 339,043㎡, 연건축면적 5,727㎡
○ 개원예정일	'93 4월경